

# 特許手續을 위한 微生物의 國際寄託과 부다페스트條約

睦 延 均

(KORSTIC 技術情報 2 部長)

## I. 부다페스트條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先端技術에 의해 微生物 및 遺伝子의 組換技術 등으로서 環境淨化, 代替에너지, 化學工業, 醫藥學, 農水產分野 등 모든 產業分野에 있어서 革新的인 技術發展을 도모하고 있는 이때에 特許手續을 위한 微生物의 國際寄託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이 1980年 8月 19日에 發效, 現在 美國, 프랑스, 英國, 西獨, 日本, 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스페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등 12個國이 加盟하고 있으며 EPO (European Patent Office)가 宣言書의 通告를 遂行하고 있다.

이 條約은 一定의 要件을 갖춘 微生物의 寄託機關을 所定의 節次에 의해 國際寄託當國으로 承認을 하게 되며, 締約國의 出願인이 어느 一個所의 國際寄託當局에다 微生物을 寄託하고 EPO나 締約國에 特許出願을 할 경우 寄託當局으로부터 交付되는 寄託番號를 받아 이를 提示하게 되면 締約國中의 어느 나라에서나 그의 有效性을 발휘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는 從來의 國際間에 微生物의 重複寄託을 排除하고 微生物의 寄託에 따른 手續, 經費 등의 輕感을 도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條約 및 規則에는 이를 目的을達成하게 하기 위해 必要한 國際寄託當局의 要件, 그 地位의 取得 및 終止, 限定, 國際寄託當局이

遂行하는 業務, 微生物의 寄託 및 分讓에 관한 手續 등이 規定되어 있다.

## 2. 國際寄託當局

부다페스트條約上 微生物에 關聯한 實質的인 業務를 遂行하는 活動機關은 國際寄託當局으로서 現在는 다음의 세 機關(그림 1)이 國際寄託當局의 地位를 取得하고서 그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 3. 國際寄託當局의 業務

國際寄託當局의 주된 業務는 微生物의 受託, 保管, 分讓에 관한 事項으로서(그림 2) 業務概要를 보게 되면 먼저 國際寄託當局은 寄託者로부터 보내온 微生物과 原寄託申請書를 接受하고 受領한 微生物에 대해 受託을 拒否할 事由가 없는 한 寄託申請者에게 受領한 事項을 通告한다.

또한 受託業務中 受託을 拒否할 理由로는

(1)寄託하려는 微生物이 當該當局에서 受託할 수 있는 種類의 微生物이 아닌 경우

(2)寄託하려는 微生物이 當該當局에서 技術的 理由로 인하여 保管이 不可能할 경우

(3)寄託하려는 微生物의 容器만 보내지고 實際 微生物이 送付되어지지 않은 경우 및 送付된 微生物이 汚染되어 있을 경우 등이다.

名稱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Agriculture Research Culture Collection(NRRL)	通商產業省工業技術院 微生物工業技術研究所(FRI)
住所	12031 Parklawn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2 U. S. A	1815 North University Street, Peoria, Illinois 61604 U. S. A	茨城縣筑波群 谷田部町 東一丁目一番三號 日本國
職員数	100	11	7
使用語	英語	英語	日語
受託微生物의 種類	藻類, 細菌(放線菌包含) 박테리오파지 細胞培養 곰팡이(酵母包含) 푸로토조아, 動植物바이러스 플래즈마이드를 含有한 細菌 但, NIH實驗指針에서 P <sub>1</sub> , P <sub>2</sub> 레벨의 것에 限함	農業上 및 工業上重要한 細菌, 酵母, 곰팡이, 放線菌 NIH實驗指針에서 P <sub>1</sub> 레벨의 遺伝子 組換微生物 但, 다음의 것은 除外 액티노바실루스属 등 32属 및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남 등 19種의 微生物 凍結乾燥되지 않는 곰팡이, 바이러스 性劑, 리케티아性劑, 클라미디아性劑, 파지, 플래즈마이드, 混合菌, 美國內 에서 頒布認可를 必要로 하는 사람 및 動植物의 病原菌, 보통 方法에 의해 凍結乾燥되지 않는 微生物	곰팡이 酵母 細菌 및 放線菌 但 다음의 것은 除外 ①건강 혹은 環境에 대해 害를 미치거나 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性質을 가진 微生物 ②組換DNA 實驗指針에 의한 P <sub>2</sub> , P <sub>3</sub> , P <sub>4</sub> 레벨의 遺伝子組換微生物

그림 1. 國際寄託當局의 地位를 取得한 寄託機關

受託을 拒否할 理由가 없는 한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을 受領하고 그다음 原寄託申請書의 記載要件에 대해 檢討한 다음 完備된 段階에서 微生物을 受託하게 된다.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을 受託한 後 바로 國際樣式에 따라 受託証을 交付한다. 이때 受託証에 記載되는 寄託日은 國際寄託當局이 微生物을 實際로 受領한 날이 된다.

그다음 國際寄託當局은 微生物의 生存與否에 관한 試驗을 遂行하고 나서 寄託者에게 國際樣式에 의해 微生物의 「生存에 관한 証明書」를 교부한다.

또한 寄託微生物이 生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要旨가 寄託者에게 通知되며 이 通知書를 받은 寄託者는 당연히 原寄託申請을 새로이 할 수 있다.

微生物의 生存試驗을 끝낸 후 國際寄託當局은

當該微生物을 적어도 30年間 保管한다. 그리고 保管中에 寄託微生物의 試料에 대한 分讓請求가 있게 되면 國際寄託當局은 이를 所定의 節次에 의해 分讓을 하고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한다.

保管期間을 通하여 保管中에 있는 微生物이 死滅하는 등으로 當該微生物의 分讓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國際寄託當局은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하여 寄託者는 當該微生物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하여 寄託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 4. 原寄託手續

##### 1) 原寄託手續

原寄託手續은 寄託者가 國際寄託當局에 微生物과 所定의 事項을 記載한 原寄託申請書를 提出하게 되면 所定節次에 의해 當該當局으로부터 「受託証」 및 「生存에 관한 証明書」를 交付받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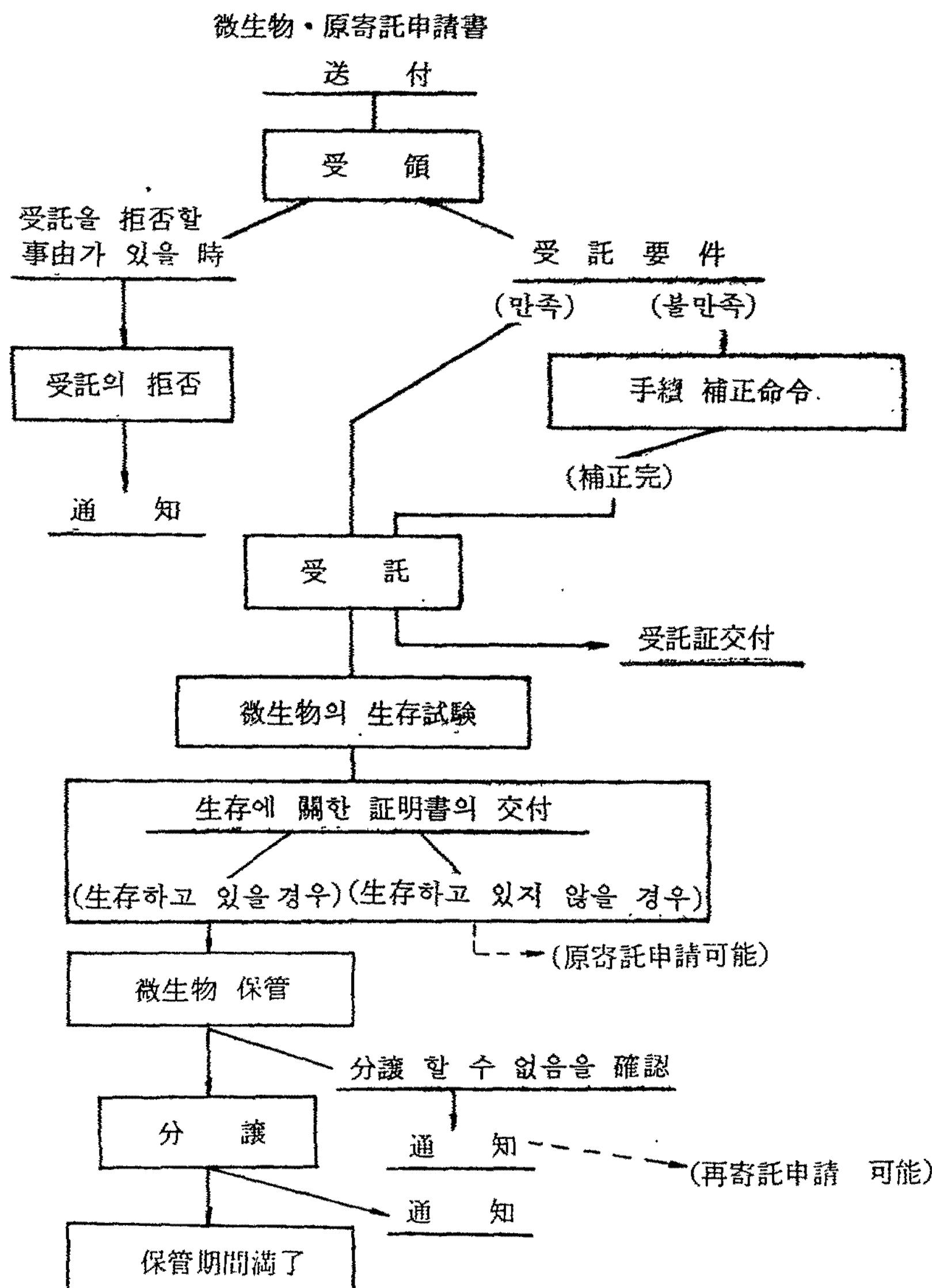


그림 2. 國際寄託當局의 業務

된다.

寄託者は 이 受託証에 記載되어 있는 受託番號를 出願明細書에 記載하여 各國의 工業所有權廳으로 出願하면 된다.

## 2) 再寄託手續

國際寄託當局에 寄託되어 있는 微生物이 保管中에 死滅하였거나, 輸入制限 등에 의한 理由로 分譲할 수 없을 경우, 그 要旨가 寄託者에게 通知되며, 이 경우 寄託者は 原寄託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當該再寄託에 대한 通知를 받고나서 3個月 以内에 再寄託을 하게 되면 原寄託한 日字와 同一하게

취급된다.

再寄託手續은 原寄託을 한 微生物과 同一의 微生物을 再寄託申請書와 함께 提出하게 되는데, 이때 再寄託申請書에는 再寄託하는 理由 및 原寄託 微生物과 同一하다는 等의 要旨를 陳述하도록 되어 있다.

再寄託微生物을 受託한 當該國際寄託當局은 寄託者에게 새로운 受託番號를 記載한 「受託証」 및 「生存에 關한 証明書」를 交付한다.

寄託者は 새로 交付받을 受託証에 記載되어 있는 受託番號를 各國工業所有權廳으로 通知하고 必要할 경우에는 受託証의 寫本을 提出한다.

### 3) 移送手續

國際寄託當局이 그業務를停止하였을 경우當該當局을保証한締約國은當該當局이保管하고 있는寄託微生物과이에관련한모든情報를 다른國際寄託當局으로移送하게되는데이에대한最大限의努力을도모하여주도록되어있다.

이때代行의國際寄託當局이業務를停止한不履行의國際寄託當局으로부터微生物의移送을 받았을때에는當該代行當局은寄託者에게새로운受託番號를記載한『受託証』및『生存에관한證明書』를交付하게되는데,寄託者は受託証에記載되어있는受託番號를各國工業所有權廳으로通知하고必要에따라서는受託証의寫本을提出한다.

### 4) 微生物의科學的性質등에 대하여

寄託者が原寄託申請을할때,申請書中에는微生物의科學的性質및分類學上의位置를表示하도록要請하고있는데,이들의表示가되어있지않을경우後日에表示할수있는기회를준다.

이들의表示가되어있는것에대하여는受託証中에表記되어지며,또한後日에表示되었거나修正되어진것에대하여는寄託者の要請에의해그要旨의證明書가交付된다.

微生物의科學的性質및分類學上位置의表示는國際寄託當局이當該微生物을취급함에있

어서혹은寄託된微生物과特許出願明細書中에記載되어있는微生物과의同一性에관해論難이發生할경우 이를해결하기위한方法의일환이될것이다.

### 5. 微生物의分讓手續

國際寄託當局에寄託되어있는微生物의試料는關係工業所有權廳,寄託者 및寄託者의承諾을얻은者나法令上試料의分讓을받을資格을가진者등이分讓을받을수있다.

#### 1) 關係工業所有權廳에의分讓

關係工業所有權廳에의分讓은締約國등의工業所有權廳에게되면無條件分讓을받을수있는데,반면에分讓을받을수있는一定한要件이갖추어져있어야하며다음과같은條件에의한다.

①當該工業所有權廳에寄託微生物에관한出願이되어,이出願의對象이當該微生物 또는그의利用에관한것일것

②當該出願이當該工業所有權廳에關聯되어있거나또는當該出願에대하여特許가부여되어있을것

③當該工業所有權廳에있어서當該微生物을特許手續上必要로할때이며또한當該手續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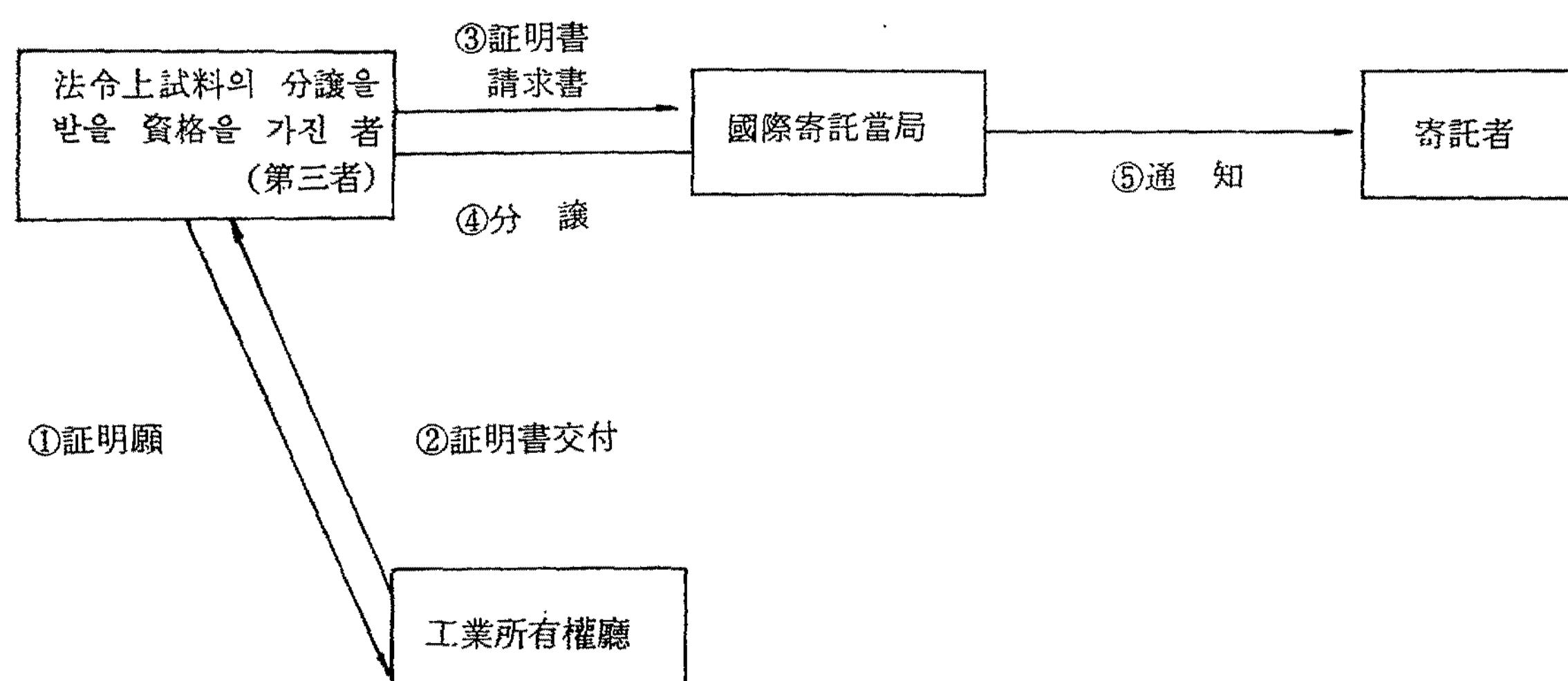


그림 3. 法令上試料의分讓을받을資格을가진者에의分讓(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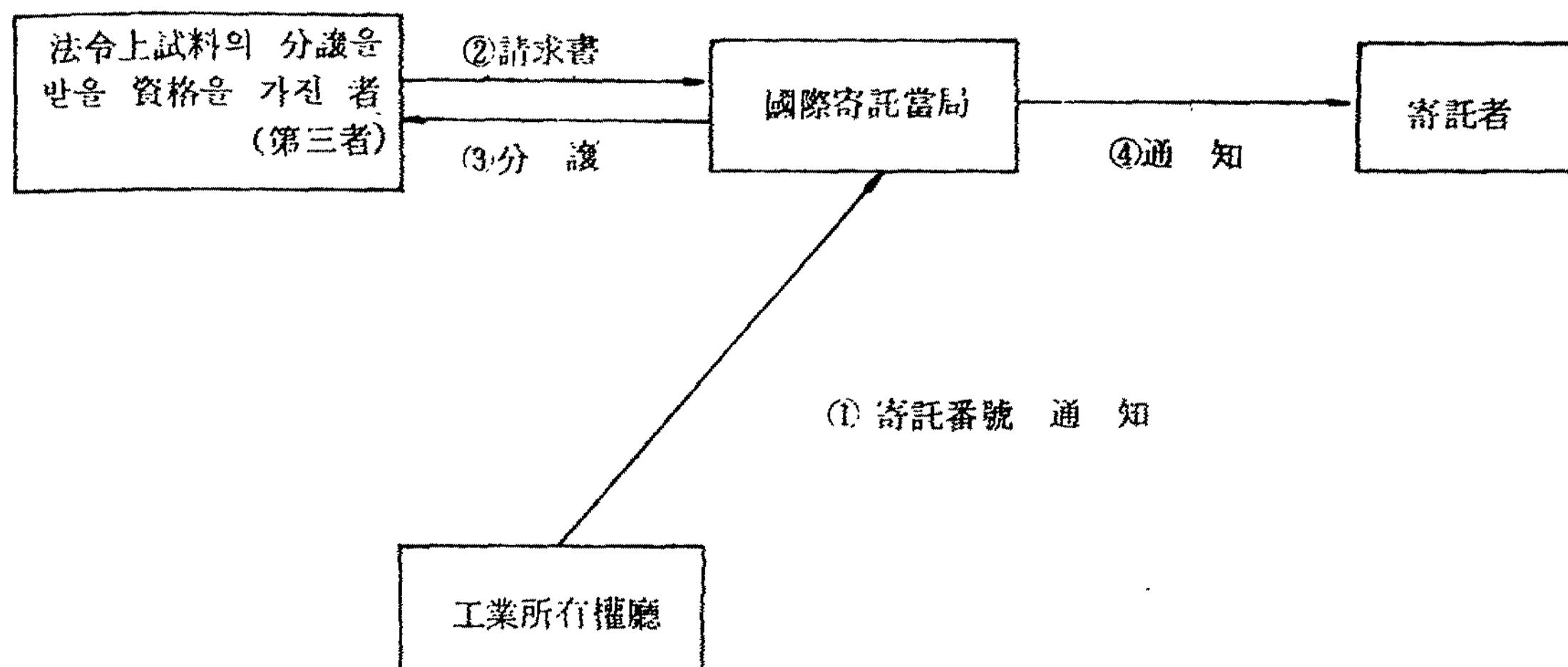


그림 4. 法令上 試料의 分譲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에의 分譲(②의 경우)

使用할 것 등인데 上記 與件의 內容을 陳述한 宣言書를 分譲請求書와 함께 提出하면 된다.

또한 이를 分譲하기에 앞서 當該國際寄託當局은 그 要旨를 寄託者에게 通知한다.

#### 2) 寄託者 및 寄託者의 承諾을 얻은 者에게의 分譲

寄託者は 단순히 分譲請求書를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함으로써 微生物試料의 分譲을 받을 수 있으나, 寄託者の 承諾을 얻은 者가 分譲을 받기 위해서는 微生物試料의 分譲을 承諾하는 要旨의 宣言書를 分譲請求書와 함께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하면 된다.

#### 3) 法令上 試料의 分譲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에게의 分譲

法令上 試料의 分譲을 받을 資格을 가진 者 소위 第三者が 試料의 分譲을 받으려고 할 때의 手續으로는 制度的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① 第三者は 自己가 寄託微生物試料의 分譲을 받을 資格을 가진 要旨의 証明書交付를 當該微生物에 關聯된 特許出願이 되어있는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交付받아 가지고 이 証明書와 함께 分譲

請求書를 國際寄託當局으로 提出하면 된다 (그림 3).

② 工業所有權廳이 寄託微生物에 관한 出願을 特許하여 公表하였을 때에 當該微生物의 寄託番號를 國際寄託當局에 通知하고, 當該當局은 그 微生物의 試料를 第三者的 請求에 따라서 分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第三者は ①의 경우와는 달리 証明書의 交付를 工業所有權廳으로부터 받을 必要없이 分譲請求書만을 國際寄託當局에 提出하면 된다 (그림 4).

## 6. 우리나라의 微生物寄託制度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條約에 加盟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改正特許法이 1981年 9月 1日부터 施行됨에 따라 同法 施行令 第1條 2項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實施되는 微生物寄託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特許廳告示 第5號로서 「韓國科學技術院」과 「韓國種菌協會」를 微生物寄託機關으로 각각 指定하였다.